

## 유통구조안내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水 協 中 央 會 流通部

李 又 燐

금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목표는 276만톤으로 어류 169만톤(61%), 패류 43만톤(16%), 해조류 37만톤(13%), 연체동물 등 기타 수산물이 27만톤(10%)이며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것이 총 생산량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총 수요는 285만톤으로 9만톤을 외국에서 수입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중 국내에서 소비되는 량은 214만톤으로 약 73만톤이 가공용 원료로 공급되고 141만톤이 선어 또는 냉동품으로 유통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수산물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에 따라 유통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수산물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잘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수산물은 공산품이나 농산물과는 달리 어종에 따라 생산되는 시기, 장소, 생산량 등이 불확실하여 계획적 생산이 어렵고, 일시 다회되거나 계절에 따라 생산자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므로 수급조절에 한계가 있으며, 강한 부패·변질성으로 거래상 시간적 제한을 받는다.

수산물은 육상동물의 육질에 비해서 수분이 많고 조직이 연하여 세균이 부착 변성하기 쉽고 지방질은 불포화도가 커서 산화 변질하기 쉽다.

특히 수산물은 어획과 동시에 대부분은 사망하고 부패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패한 상태가 일정한 수준이상 되면 생선상품으로써 가치를 상실하게 되므로 보관상의 기술이 유통상의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거래 자체도 선물(先物)

거래 또는 격부(格付) 거래가 불가능하다. 현물(現物)거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선도(鮮度) 또는 규격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매매 당사자가 직접 현물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상호 거래가 형성되고 가격 등이 결정된다.

이러한 수산물의 특성으로 인해 유통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협은 어민이 생산한 수산물을 적정가격으로 판매하여 줌으로써 생산자를 보호하고 유통과정에서의 유통단계 단축과 어획물 취급개선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도 힘써야 하는 당면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주요 유통대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다.

## ○ 유통대책의 기본목표

수협의 유통대책 기본목표를 계통출하 확대로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수급조절 기능강화로 가격 안정을 지속시키는데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첫째, 생산지 판매에서 공동판매율을 90%까지 끌어 올리기 위하여 객주기능을 수협이 대행할 수 있도록 긍정적 기능을 흡수 보완 발전시키며, 판매시설을 확충하고, 대어민 판매 써어비스를 강화한다.

둘째, 내륙지 계통출하 확대를 위하여 내륙지 공판기능을 활성화하고 산지와 소비지 직거래 사업을 촉진함과 아울러 가격지지 및 안정사업을 확대하여 수협이 내륙지 소비 유통량의 20%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세째, 유통업무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

한 유통조성(流通助成) 면에서도 유통정보망을 보강하여 전산화하고 수산물 거래단위를 표준·규격화 함과 아울러 수산물 식량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므로서 수산물 유통에 대한 수협의 기능을 제고시킨다.

### ○ 산지수협 판매기능 강화

생산지의 공동판매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수협은 집하와 동시 분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산지와 소비지 유통경로의 첫 단계를 형성한다.

금년도 공동판매는 연근해 생산 2,156 천톤의 88%에 해당하는 1,897 천톤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지 위판장 시설을 1,000평 더 확장하고 콘베아벨트, 크레인 등 양육장비를 증설토록 하고 어민의 판매대금을 신속 정확히 지급할 수 있도록 어대금 정산용 컴퓨터를 확충시키며 산지 판매수수료를 아래 표와 같이 위판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으므로 대량으로 취급하는 항구와 소량으로 취급하는 항구와는 취급 수수료가 다르므로 정확한 어가정보와 시간상의 제 여건 등을 판단하여 입항 항구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표) <산지 판매 수수료율>

위판액별	수수료율
연간 50억 원 미만	5% 이내
" 50~500억 원	4% "
" 500억 원 이상	3.5% "

또한 위판장의 공정거래 유도와 위판 과정상의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경매방법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수지호가제(手指呼價制)를 종전 16종에서 1종으로 통일시키고 이를 널리 알리도록 하여 전국 위판장에서 똑같이 실시도록 하였으며 경매순서 또한 물량 도착 순위에 따라 실시도록 제도화시켜 조기 정착도록 지도 계몽하고 있다.

아울러 위판장 판매업무 종사 요원을 경매요원으로 양성하며 중매인과 매매참가인 가입문호를 개방하여 연중 수시 모집함과 동시에 거래실적이 없거나 공정거래를 방해하는 부실중매인은 과

감하게 도태시키며 우수한 중매인에게는 성어기에 임시거래 한도를 추가 부여함으로써 판매활동의 탄력성을 갖도록 한다.

또한 일부 어촌 및 해안도시에 뿌리깊게 침투하고 있는 객주를 배제하기 위하여 객주 역활증 자금공급, 선수품 구매알선 등 긍정적인 기능은 수협이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제반 대책을 강구하며 부정적 비리는 단계적으로 추방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연근해 영어자금을 1,800억원에서 2,07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70억원을 순증 확대 공급하고 산지 위판자금도 대폭 확대하여 어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 필수품과 선수품도 염가로 공동구매 공급한다.

수송수단 불비로 일시 다량 집하가 어려운 낙도·벽지의 위판 취약품목에 대하여는 조합에서 차량·선박 등 수송수단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동수집책을 선정하여 순회 수집토록 하고, 어촌계 공동수집 책임자에게는 성과급으로 수수료 5% 중 2%를 환원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수협 임직원의 친절 봉사운동을 생활화하여 조합단위로 대어민봉사반을 편성하고 주야간 교대로 입항시 벳머릿줄 매어주기, 입출항 수속대행, 어대금 정산협조, 축박 및 선수품 구매알선 등 어민의 고정사항 해소와 판매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간부직원은 일일 안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어민복지를 위한 휴게실, 목욕탕, 이발소, 매점 등을 위판장내 또는 위판장 부근에 시설토록 하여 대어민 판매 씨어비스를 강화한다.

### ○ 내륙지 계통출하 확대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마진을 절감하기 위하여 수협의 내륙지 계통출하 확대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수협에서는 산지와 소비지의 판매망이 완비되어 있음에도 수협계통에 의한 출하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수협은 서울과 춘천, 수원, 대전, 청주, 대구, 전주, 광주, 진주 등 9대도시에 10개의 내륙지 공판장을 근대식 시설로 완비하였음에도 대부분 공판장은 개장한지 얼마되지 않아 판매기

반인 미약할 뿐 아니라 유통 세제상의 불합리 및 업무의 경직 등으로 상인과의 경쟁력 면에서 따라갈 수가 없으므로 그 취급 실적이 저조하여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지의 유통 분산기능을 지금까지 중간상인이 주도하여 유통단계의 복잡다단과 가격상의 불공정 거래 등으로 결국 소비자가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공급 측면에서도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인 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상인 주도의 유통기능을 견제하고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수협의 계통출하체제를 확립하고 내륙지 공판장을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수협의 금년도 내륙지 계통출하 계획은 어민 직출하, 조합매취출하, 내륙지공판장 자체매취 등 유형별로 목표를 부여하여 지난해의 38 천톤에서 113 천톤으로 획기적으로 확대 책정하였으며 이는 10개 내륙지 공판장 총 취급계획량 212 천톤의 53 %에 해당된다.

계통출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민 직출하를 적극 권장한다. 어민이 수협 내륙지 공판장에 직출하 한 물량에 대하여는 판매대금의 0.3 % 해당금액을 출하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판매 예상액의 70 %까지 출하 선급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생산자재 및 포장용기를 염가로 공동구매 공급하며 출하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출하 상담실과 대기실을 설치 운영하고 탁송물 관리, 숙박알선과 신속한 유통정보를 제공한다.

금번 정부에서는 대도시 소비지역에 어민 직출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산청 고시 제 26호를 개정하였다.

수산자원보호령(제 19조 1항)에 의거 모든 어획물은 지정된 항구에서 판매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내륙지에 설치된 수협 공판장에 한하여 지정된 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직출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84. 4.1부터 인천, 속초, 군산, 수협 위판장 및 부산 공동어시장에 양육되는 선어류는 산지조합 위판을 거치지 않고 서울시 지정 도매시장에 직출하 할 수 있도록 직출하 범위를 넓혔다. 여태까지 연안 위판장과 수협 내륙지 공판장에만 허용

했던 판매권을 법정 도매시장에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은 수산물 유통단계 단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생산어민이 서울도매시장으로 직출하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양육지 조합의 반출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과 부산 공동어시장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어떠한 명분으로라도 일체의 비용이나 수수료를 징수치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다.

조합 매취출하에 대하여는 계통출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중앙회가 원가수준으로 충당해 준다. 따라서 내륙지 공판장의 출하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계통출하에 임하도록 산지 조합별로 계통출하 목표로 부여하였다.

선어류 위판 100억원 이상인 조합에 대하여 연근해 주요 대중 선어류(연간 10,000 톤 이상의 다회성 어류) 위판량의 10 % 이상을 계통출하도록 하며 안강망, 선망 및 대형기선저인망 조합에는 어민 직출하를 유도하도록 함과 동시에 기타 위판조합은 수급조절 및 가격지지사업을 위한 필요 품목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출하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계통출하에 대하여는 농안기금과 자체 경제사업자금을 최대한 연계 지원하며 연근해 대중 어종의 취급규모가 큰 부산 공동어시장에도 내륙지 공판장과 연계 출하 하도록 유도하고 원양어획물 내수 반입시에도 수협이 적극 참여하여 소비지 수산물 공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 ○ 산지·소비지 직거래 촉진

제도시장의 운영개선과 병행하여 중간상인을 배제할 수 있는 유통기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산지와 소비지간의 다양한 직거래 경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유통산업도 대형화를 통한 현대화 추진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은 전래로부터 산지 위판에만 치중하고 있고 소비지 유통은 일반 도매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유통경로는 복잡 다양하고 도매시장의 기능 또한 취약하기 짜이 없다. 정부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현대화를 위하여 주

요 6대 도시에 종합유통단지를 조성코자 1단계로 서울 가락동에 대단위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공공투자로 시설하고 있으며 이어서 대구와 대전에도 금년중에 착공하도록 제반 준비를 하고 있다.

산지 유통체제에 비하여 소비지 유통은 문자 그대로 유통의 부재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도시장을 사회 간접자본이란 차원에서 공공투자를 원칙으로 시설하여 지방 자치단체로 하여금 제도시장을 관리도록 하고 운영면에 있어서도 대리하주에 의한 물량유치 등 공익기관으로서 도매거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장소 제공에 불과한 현 도매시장을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요도시의 유통근대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제도시장의 공영화와 더불어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유통경로 개발이 필요하다.

산지와 소비지의 직거래 방법은 생산어민과 최종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나 앞에서 열거한 바와같이 수산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연결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협 조직을 통한 직거래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수협이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추진한 직거래 방법을 예시하면

첫째, 수협 책임하에 연쇄점본부, 슈퍼체인본부, 슈퍼마켓 등 대형 소매기구와 가공업체, 교도소, 공단 등 대량 실수요처와 직거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수협이 수산물을 공급센타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과

둘째, 위와같은 대량 수요자가 산지 위판장의 매매참가인 자격으로 직접 경매에 참가하여 필요한 수산물을 구입하는 대량수요처 경매참가 방식과

세째, 수협이 대도시에 직영 직판장을 설치하여 산지로부터 직접 구입한 수산물을 대중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금년에는 이러한 직거래 산업을 확대 추진키 위하여 수매비축을 확대하고 대량 수요처에는 120간의 의상거래를 허용하는 한편 이율도 종

전 10.5%에서 10%로 인하 하였으며 수협의 제빙, 냉동시설, 저온차량 등 모든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며 직영 직판장도 서울의 청량리 시범 직판장에 이어 광주, 전주, 대구, 진주, 대전 등 5대 도시에 공판장 병설 직판장을 설치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을 염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매시장은 전통적 거래관습으로 인해 그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제고품 처분 등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도에 따른 마진폭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매기구를 대형화, 근대화하여 합리적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협의 직판장이 선도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 가격지지 및 안정사업 확대

수산물은 일시 다획성으로 성어기에 흥수출하를 면치 못하므로 아무리 좋은 유통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완벽한 수급조절을 기하기는 어렵다.

유통제도의 개선과 함께 적절한 수급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비축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출하조절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조정 통제해야 할 것이다.

생산이 불확실한 수산물을 수급조절하기란 자금, 장비 및 판매 측면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특히 수급의 불안정과 가격 진폭이 큰 일부 품목만을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연간 10,000톤 이상 생산되는 다획성 대중어와 성수기 소비 필수품목을 대상으로 수급조절 목표(별표참조)를 설정하였다.

(표) '84 가격지지 및 안정사업계획(톤, 백만원)

구 分	품 목 별	수 량	금 액
합 계		87,350	50,151
정 부 비 축	계	3,650	11,570
	김	400	5,000
	전 오징 어	150	1,600
	전 멸 치	300	1,170
	염 장 미 역	2,000	1,940
	건 명 태	800	1,860

구 분	품 목 별	수 량	금 액
생 산자 단체 출	계	83,700	38,581
하조절 및 가	가 자 미	1,599	996
격지지	명 태	3,250	1,068
	조 기	3,731	7,229
	갈 치	19,569	6,536
	고 등 어	5,951	1,166
	오 징 어	6,882	9,834
	기 타	42,718	11,752

연간 50억원 이상을 위판하는 조합에 수급조절 목표를 부여하고 수매비축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자금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위판자금을 수매비축과 연계시켜 지원한다.

정부 비축사업은 수협에서 수매를 담당하고 판매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수행토록 되어 있다.

이와같이 수매비축과 수산물은 연말연시, 추석절 또는 김장철 등 수요가 증가할 때 집중 방출하며 방출방법은 소비지 공판장 및 법정 도매시장을 통하여 판매하거나 직·민영 직판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산지·소비지 직거래방식에 의한 대량 수요자에게 공급한다.

우리나라 소비형태는 앞으로 선진국과 같이 산업의 고도화로 노동력이 증대됨에 따라 주부들

의 노동력이 흡수되므로 주부들은 보다 쉬운 방법으로 식생활을 영위할려고 하므로 점차 인스탄트 식품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선어 위주로 수급조절하는 현재의 방식을 탈피하고 후수 출하되는 수산물을 가공식품으로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반 주부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품질을 고급화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한 가공품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케 하므로서 수급안정을 기힐 수 있을 것이다.

### ○ 거래단위 표준화 및 취급 개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같은 종류라도 그 규격과 품질이 상이하여 거래단위를 표준화 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전래로 거래되는 단위만도 상자, kg, 짹, 팬, 단, 쾨, 통, 드럼, 속, 첨, 관, 마리 등 복잡한 용어와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거래량도 각양각색이므로 이를 시범적으로 표준화 하기 위하여 어민과 유통업자 소비자 대표 등 관계 전문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용성 위주로 10개 품목에 대한 표준거래단위를 설정하여 금년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별표 참조)

〈水產物 標準去來單位〉

區 分	品 目	去來單階	標 準 化 內 容			備 考
			去來單位	去來單量	包裝材	
A	전 멸치	都小賣	포 봉 지	3 kg 500 g, 1 kg	지 대 비 널	
B	전 오징어	"	축	10 마리		
	북 어	"	쾌	"		
	굴 비	"	두 룸	"		
C	김	"	속 첩	10 첨 10 매		매당 규격을 統一
				※ 1매의 크기 : 가로 206 mm 세로 189 mm		
				1 속의 무게 : 180 g 이상		
	꼭지 미역	"	봉 지	500 g, 1 kg	비 널	
	건 미 역	"	단	10 장 ( 1 장 규격 가로 100 cm, 세로 10 cm )	-	"
D	굴	都 賣	통	5 kg, 10 kg	함 석	
	반 지 락	"	포 대	10 kg	면 직 물	
	새 우 젓	"	드 림	200 kg	철 판	
	멸 치 젓		통	20 kg	함 석	

이번에 시행된 표준거래 단위 중 일반관례와 달라진 것은 미역 1단 20장을 10장으로, 건오징어 1축, 복어 1채, 굴비 1두름의 각 20마리를 각각 10마리로 통일시킨 점이므로 생산어민은 표준거래 단위에 맞추어 생산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표준거래 단위를 하루 빨리 정착시키기 위하여 어민과 유통업자 및 일반소비자에 대한 지도계몽을 강화함과 동시에 생산어민에게는 규격출하 축진자금을 금년도에 신규로 5억원을 지원하며 표준규격의 포장 및 용기를 염가로 공동구매 보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생산어민은 일단 생산에서 산지 위판장에까지 입항하여 위판만 하면 그만이라는 관념이 전통적으로 뿌리박혀 있고 위판장 경매 이후의 유통에는 하등 관심이 없다. 또한 많이 입상하여야 제값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유통과정에서의 상품 훼손이라던지 신선도 유지, 경매후 재입상하는 노력 등 2차적 유통에서의 어획물 취급 관리상의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음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생산에서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유통과정을 규격화된 포장 용기로 정량 입상 및 포장하고 취급관리 개선을 꾸준히 지도계몽하여 상품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어상자 겸사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행정적 유통단속을 병행하여 비규격, 비위생적 어상자를 사용할 때는 위판금지 등 제반규제를 강화하며 규격 어상자를 공동 구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내수용 김과 정부 비축용 수산물에 대한 겸사제도를 조기 정착시키도록 겸사원 자질향상 교육을 확대함과 동시에 겸사원 자격전형을 실시하여 겸사원을 더욱 많이 확보할 계획이다.

### ○ 유통정보기능 강화

오늘과 같은 정보시대에는 누구나 손쉽게 정확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신속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무엇보다도 자료의 정확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있다.

따라서 상품의 품질과 거래단위의 규격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수협은 전국 49개의 어업무선국 및 9개소의 TTY시설을 정보센타화 하여 전국 주요 생산지 23개 어항과 내륙지 공판장 5개소를 정보 수집 대상으로 주요어종 27개 품목에 대한 수산물 생산량과 어가를 조사, 분석 판단하여 전국 조업어선과 소비자에게 전파하고 있다.

이러한 유통정보를 보다 빨리, 보다 정확히 전파하기 위하여 유통정보 전산터미널을 설치하여 농수산부의 유통상황실과 연결시켜 '84.6.1부터 운영하게 되며 계통조직의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모사전신기(페시미리)를 지난 5월 중에 17개소(산지 8, 내륙지 9)에 설치하여 운영중이다. 또한 내륙도시의 소비자를 위하여 서울의 자동응답전화 장치에 이어 지난 연말에는 대구공판장에도 이를 신설 개통하였으며 매월 유통정보지를 500부씩 발간 배포함과 동시 TV, 라디오, 신문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수산물에 대한 정보자료를 신속히 공급해 나갈 것이다.

이상과 같이 유통구조개선은 어느 기관이나 특정 개인에 의하여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과감한 유통체계 개선과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통종사자들이 명감을 가지고 정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효과적인 수산물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